대한비과학회 의무윤리위원회 규정

(2012. 2. 5. 초안)
(2012. 3. 11. 제정)
(2013. 3. 10. 개정)
(2014. 3. 9. 개정)

제1조(명칭) 본회는 대한비과학회 의무윤리위원회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비과 관련 의료사고 심사 및 이에 관한 외부기관의 자문에 관한 업무와 학회 내 의료윤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업무)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1. 의료제도 관련 업무
2.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 방안 연구
3. 의료 정책 관련 업무
4. 의료 단체 내 및 단체간 관련 업무
5. 의료 윤리에 관한 심의 업무
6. 의료관련 각종상의 심사에 관한 업무

제4조(구성) ① 본회는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의무이사가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(수정) 위촉한다.
② 의무이사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
③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임명할 수 있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본회는 위원장이 필요 시 개최한다.
② 회의는 의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.

제6조(재정) 본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회에서 부담한다.

제7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.